

새 정부 복지확대에 따른 경기도 재정전망

급여 확대(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당신설(아동수당), 시설확충(치매안심센터)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대응지방비 부담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

- (급여확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 인상 등으로 인해 경기도는 2022년 기준 약 1조 148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됨
- (아동수당 신설)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만 5세 이하 월 10만원 지급)으로 인해 2018년 기준 2,620억원의 재정부담이 신규 발생(국비:지방비=70:30)
- (치매안심센터) 31개 시군에 44개 치매안심센터 건립 및 리모델링 및 운영비(인건비 등)로 2018년 기준 152억원의 재정부담이 신규 발생(국비:지방비=80:20)

〈표〉 5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2018년				2022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국기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570	2,166	259	145	16,567	13,759	1,847	961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7,738	5,505	446	1,786	21,574	15,350	1,245	4,979
치매안심센터 설치·인상	759.9	607.9	30.1	121.9	517.0	413.6	0	103.4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	1,972	1,380	118	473	3,723	2,606	223	893
아동수당 신설	8,735	6,114	1,310	1,310	8,603	6,022	1,290	1,290
합계	21,775	15,773	2,163	1,310	50,984	38,151	4,605	8,226

대응지방비 부담수준은 경기도,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파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에 지방(재정)분권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

- 현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다른 지방(재정)분권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사무배분기준 변경(지방자치 강화)과 함께 지방세율 증대(지방재정분권)를 동시에 진행한 ‘스웨덴식 지방분권형 모델’을 적극 건의
- 추가로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대응비 자연감소 전략’을 제안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우선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CONTENTS

- I. 주요 복지분야 확대에 따른 경기도 재정전망
- II. 경기도 대응방안

I. 주요 복지분야 확대에 따른 경기도 재정전망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업 개요

- (생계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

□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 ('17.11월~)
 -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적용)
 - 노인·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단계적 확대 추진 ('19년~)

□ 기대효과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개선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 대응 및 소득 양극화 해소

□ 경기도 재정전망

-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확대 추진 전략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자료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추가 재정소요액을 추정
 - 노인 및 1-3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나, 이후 단계적 폐지안은 확정된 것이 없어 '18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추계
 -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 (국비+지방비)에 대하여 2022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2017)의 추계자료를 활용
 - 2016년 기준 부담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며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생계급여의 경우 국비(86%), 도비(8.2%), 시군비(5.8%)이며, 의료급여의 경우 국비(80%), 도비(14%), 시군비(6%) 수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18년에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경기도의 생계·의료급여 추가 재정소요액은 총 932억원(생계급여-80억, 의료급여-852억)으로 전망

- 2018년 경기도의 생계급여 추가 재정소요액 80억원 중 국비(68.9억)의 부담이 높으나, 도비(6.5억), 시군비(4.6억)의 부담 증가도 수반
- 2018년 경기도의 의료급여 추가 재정소요액 852억원 중 국비(681.6억)의 부담이 높으나 도비(120억), 시군비(50.4억)의 부담수준은 매우 높음
- 더욱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는 2022년의 경우 한해에만 총 1조 4,808억(생계급여-6,419억, 의료급여-8,389억)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
 - 생계급여의 경우 2022년 추가 재정소요액 6,419억원 중 국비(5,528억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도비(524억원), 시군비(367억원)의 부담도 매우 높음
 - 의료급여의 경우 2022년 추가 재정소요액 8,389억원 중 국비(6,711억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도비(1,181억원), 시군비(497억원)의 부담은 생계급여 보다 매우 높음
- (주거급여)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향후 2022년까지 경기도의 주거급여 추가 재정소요액은 총 8,487억원(국비-7,335억 도비-686억, 시군비-467억)으로 전망
 - 주거급여는 향후 5년간 총 5조 4,261억원(연평균 1조 85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기준으로 부담비율은 국비(86.42%), 도비(8.08%), 시군비(5.5%)임
 -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기초수급자에서 선정제외 된 비율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6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전국대비 15.66%)을 기초로 추정한 결과,
 - 향후 5년간 경기도의 주거급여 비용은 총 8,48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도비는 686억원, 시군비는 467억원으로 추정됨
- 단년도로 기준으로 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8년-총 1,638억원, 2022년-1,7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8년 주거급여 추가 재정소요액 1,638억원 중 국비는 1,416억원으로 가장 높으나, 도비(132억), 시군비(90억)의 부담도 매우 높음
 - 2022년에는 더욱 늘어 국비(1,520억), 도비(142억), 시군비(97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가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8년과 2022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경기도의 총 추가 재정소요액은 최소 2,570원에서 최대 1조 6,5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중 국비 부담액은 2,166억원~1조 3,759억원, 도비는 259억원~1,847억원, 시군비는 145억원~96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이는 단년도 회계 기준이며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시점에 따라 소요재정액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기가 단축될 수 있음

〈표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

(단위: 억원)

	부담주체	2018년	2022년
생계급여	총계	80	6,419
	국비	69	5,528
	도비	7	524
	시군비	5	367
의료급여	총계	852	8,389
	국비	682	6,711
	도비	120	1,181
	시군비	50	497
주거급여	총계	1,638	1,759
	국비	1,416	1,520
	도비	132	142
	시군비	90	97
총계	총계	2,570	16,567
	국비	2,166	13,759
	도비	259	1,847
	시군비	145	961

2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 사업 개요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 지원내용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수준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 (기준연금액 인상)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

□ 기대효과

-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상대빈곤율은 '16년 현재 46.5%에서 '18년 44.6%, '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통계청 '16년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분석(국민연금연구원, 2017)
-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는 '17.4월 475.1만명에서 지속 증가하여, '18년 516.6만명, '21년 598만명으로 증가 예상

□ 경기도 재정전망

- 기초연금 대상자(70% 확대) 및 수급액 증가('18년 25만원/월, '21년 30만원/월)에 따라 경기도 노인의 절대 빈곤율은 36.2%에서 29.8%(25만원 기준), 26.3%(30만원 기준)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자체 추정결과)
- 기초연금 강화에 따라 추가예산은 5년간 총 6조 8,792천억원 증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 평균 총 1조 3,758억원(국비-9,789억원, 도비-794억원, 시군비-3,175억원) 증가 예상(아래 참조)

[기초연금 추계 방식]

- 경기도 31개 시군별 노인인구증가율, 기초연금액 상승분(2018년-25만원, 2021년-30만원), 시군별 국고보조율 바탕으로 추정
 - 수급액: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균등수급(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인당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노인인구증가율: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 복지균형발전기준선 연구에서 활용한 31개 시군별·연령별 인구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각 년도의 노인인구를 추정
 - 31개 시군별 국고보조비율은 2017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표 2〉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8	7,738	5,505	446	1,786
2019	9,163	6,519	529	2,115
2020	11,112	7,906	641	2,565
2021	19,206	13,665	1,108	4,433
2022	21,574	15,350	1,245	4,979
합계	68,792	48,945	3,969	15,877
연평균	13,758	9,789	794	3,175

주: 수급자는 시군별 노인인구증가율에 따른 자연증가분임.
도비 증가분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인상에 따른 결과임

3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 사업 개요

- 전국에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 위험군 초기부터 지속적 관리지원

□ 지원내용

- 전국에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건소를 지원할 지역사회 치매 관리 인프라는 보장하고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
 - 기존 운영 중인 47개소를 제외한 205개소 확충(전국 보건소 252개)

- '17년 추경을 통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17년 12월부터 운영예정이며, 센터 당 25명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구성 지원

□ 기대효과

- 치매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공백없이 지원
-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부터 담당 코디네이터의 의해 증상 진행 경로에 따라 체계적 관리
 - 환자와 가족들이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를 지속 지원 받음
 - 고위험군 및 경증 치매환자(장기요양 미등급자)도 지역에서 주간보호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이용

□ 경기도 재정전망

-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하여 국비부담율은 80%로 20%에 대하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17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다른 시군의 경우 광역-기초의 부담비율을 50:50으로 설정함
 - 복지부는 치매지원센터 설치비용을 개소당 7.5억원, 운영비를 개소당 13.7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2017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안) 자료 참조)
 - 경남 양산 및 대전 등 '17년 추경안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설립 예산을 확정된 시군의 경우 광역-시군비 부담비율을 50:50으로 설정하고 있음
-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군 44개소의 총 설치비-300.5억원, 평균 운영비-487.7억원 등 5년간 총 2,739.1억원 소요 전망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족사랑 이음센터 10곳의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경기도에는 기존의 보건소 수에 추가하여 총 44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완료될 예정
 - 리모델링 및 신규설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인력(25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개소
 - 경기도의 설치년도 기준으로 총 설치비는 도비/시군비 각 30.1억원, 총 운영비는 시군비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91.9억원 소요 전망
 - 향후 인건비 상승을 고려할 때, 연간 평균 운영비로 452.6억원이 소요되어 5년간 총 운영비는 2,4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시군비는 연평균 97.5억원 소요 예정
 - ※ 연간 인건비 상승률 3% 가정시
 - 운영비의 경우 전액 시군비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군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표 3〉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총계				설치비				운영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8	759.8	607.9	30.1	121.9	300.5	240.4	30.1	30.1	459.3	367.5		91.9
2019	473.1	378.5	0.0	94.6					473.1	378.5		94.6
2020	487.3	389.8	0.0	97.5					487.3	389.8		97.5
2021	501.9	401.5	0.0	100.4					501.9	401.5		100.4
2022	517.0	413.6	0.0	103.4					517.0	413.6		103.4
합계	2,739.1	2,191.3	273.9	273.9					2,438.6	1,950.9		487.7
연평균	547.8	438.3	54.8	54.8					487.7	390.2		97.5

4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

□ 사업 개요

-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 2016년 기준으로 월소득이 단독가구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의미

□ 지원내용

-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준연금액 인상(20,6만원 →25만원, '18년 4월 시행 예정) 및 지원 대상 확대 (352천명→355천명)

□ 기대효과

-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장애인 상대빈곤율 감소 전망

□ 경기도 재정전망

- 시군별 장애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수급자는 2017년 기준 65,978명에서 2022년 135,875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며(경기도 연평균 증가율 3.31%), 향후 5년간 연평균 1,210억(국비-847억원, 도비-73억원, 시군비-290억원) 증가 예상
- 경기도의 장애인연금 급여를 상승하여 소득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매칭지원비로 인해 재정문제가 수반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국고보조율 조정) 필요

[장애인연금 추계 방식]

- 경기도 31개 시군별 장애인인구증가율, 장애인연금액 상승분(2018년-25만원, 2021년-30만원), 시군별 국고보조율 바탕으로 추정
 - 수급액: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기초연금과 연동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대선공약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균등수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인당 25만원, 2021년 부터는 30만원을 수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장애인인구증가율: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수급자 수를 바탕으로 연평균증가율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시군별 장애인인구를 추정
 - 31개 시군별 국고보조비율은 2017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표 4〉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8	1,972	1,380	118	473
2019	2,211	1,547	133	531
2020	2,552	1,787	153	613
2021	3,037	2,126	182	729
2022	3,723	2,606	223	893
합계	13,495	9,446	809	3,239
연평균	2,699	1,889	162	648

5 아동수당 도입

□ 사업 개요

-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 및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보호자의 소득수준 무관 0~5세 아동*(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현금 지급
 - '18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 (추산)
 - 단,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이외 방식(예: 고향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 시행 시기는 '18년 7월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토록 조치 예정

□ 기대효과

-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 확충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장애인 상대빈곤율 감소 전망

□ 경기도 재정전망

-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0~5세의 아동수당 대상자는 약 73만명 정도이며,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향후 대상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17년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0~5세 아동은 727,910명(도 자료)이며, '14~'16년의 3년간 아동인구 증가율은 -0.38%로 감소 추세에 있음

- 또한 중앙정부는 아동수당의 국비 70%, 지방비 30%의 분담비율을 정해놓고, 지방비 부분은 지자체의 재량사항이기에 신설 수당임을 고려하여 광역-기초의 분담비율을 50:50으로 설정
- 추정결과 경기도의 5년간 총 아동수당 재정소요액은 총 4조 3,344천억원 증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평균 총 8,669억원(국비-6,068억원, 도비-1,300억원, 시군비-1,300억원) 증가 예상

〈표 5〉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명, 억원)

	대상인원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8	727,910	8,735	6,114	1,310	1,310
2019	725,144	8,702	6,091	1,305	1,305
2020	722,388	8,669	6,068	1,300	1,300
2021	719,643	8,636	6,045	1,295	1,295
2022	716,909	8,603	6,022	1,290	1,290
합계	3,611,994	43,344	30,341	6,502	6,502
연평균	722,399	8,669	6,068	1,300	1,300

6 소결-주요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경기도 재정전망

- 이른바 5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대응비(도시, 시군비 포함)가 2022년 한해 기준 1조 282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표 6〉 5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억원)

	2018년				2022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570	2,166	259	145	16,567	13,759	1,847	961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7,738	5,505	446	1,786	21,574	15,350	1,245	4,979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759.9	607.9	30.1	121.9	517.0	413.6	0	103.4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	1,972	1,380	118	473	3,723	2,606	223	893
아동수당 신설	8,735	6,114	1,310	1,310	8,603	6,022	1,290	1,290
합계	21,775	15,773	2,163	1,310	50,984	38,151	4,605	8,226

- 2022년 도가 부담해야 하는 4,653억원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사회복지 예산 7조 3백억('21년 기준)의 6.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인 3.6%를 초과하여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해결책 마련이 시급
 - 경기도는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추계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
 - 13개 분야별 투자계획 중 사회복지 분야는 2021년 약 7조 331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증가분은 6.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지방세입의 비약적 증가 없이는 자체 복지사업의 축소 및 타 분야의 투자계획의 철회 없이는 대응지방비 증가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예견됨

II. 경기도 대응 방안

-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재정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
 - 한국의 지방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방세 등의 결정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재정 의존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지방자치의 본질까지 훼손되고 있음
 - 지방세입의 증가는 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의 확대가, 지방세출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확대가 견인차 역할
- 국가의 복지시책 확대가 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무배분 기준의 불명확, 재정분담 원칙의 미정립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의 증가는 자체사업의 증가가 아닌 대부분 의무적 지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음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위원회 및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재정분권의 실행방안을 보고하고 각기 주도적 역할 수행을 피력
 - 기획재정부는 8월 2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밝히며, '공동세' 도입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혁의 입장을 피력
 -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9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
- 기획재정부는 현 세수구조(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변경하는 것은 시대상조이며, 지방세 특정 세목을 자치단체 간 공동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재원을 지방에 주게 되면 기능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나, 이는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먼저 달성하겠다는 의지
 - ※ '공동세': 독일식 지방재정조정제도로써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규정하고 과세권은 국세청에 두고 징수한 후, 일정비율(연방헌법에 규정)로 배분하는 방식
- 반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확충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성이 강한 세원과 연계된 세목(부가가치세, 주세 등)의 지방세 이양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안 논의
 - 또한 지방소비세(현 부가가치세 11%) 및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등 현 국회 발의 법안을 고려하여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적극 고려
- 학계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의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나, 무조건적 지방세 비중 증가는 지역간 편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
 - 조세학자들은 현 우리나라의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은 세원관리 및 과세 일원화(양도소득세), 강한 지역성(개별소비세), 지역발전특별회계 이양(주세) 등을 이유로 지방세 이양에 찬성

- 그러나 거점개발방식의 우리나라 발전전략으로 인해 서울, 경기, 인천 등 경제력이 강한 지역에 세수 집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피력
- 정부간 관계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사무의 중앙-지방간 배분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고, 배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재설정할 필요가 높으며, 지방세율의 인상 또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이에 경기도는 복지사무 배분기준의 재정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사무는 중앙정부, 일상생활 지원사무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로 개편 건의
 - 현 법률과 판례 뿐 아니라, 공무원 교재에서도 사무유형에 따라 비용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하향적 법률관계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
 - ⇒ 「지방재정법」 제 20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각각 그 경비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또한 「지방자치법」 제 141조는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
 - ⇒ 지방행정연수원 공통교재에는 국가위임사업의 경우 100% 국가 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며,
 - ⇒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8.6.26., 2005헌라7)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 하향식의 법률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실무상 기관위임사무로 판단하고 있음
 -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6대 복지사업과 같이 전국가적 차원의 기본서비스이고,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음
 - ⇒ 반면 사회서비스형 사무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지원(경로당, 화장시설, 생활시설 지원 등) 등의 사업 비용 부담도 국가가 지방정부에 비해 많이 부담하는 사례도 나타남
 - 또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한 약속의 실질적 이행(11%→21%)을 적극 촉구하며, 향후 국세/도세/시군세 조정 및 세율 인상을 적극 건의
-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과 더불어 권한의 이양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세 비중 확대 및 권한의 재분배를 동시에 진행한 스웨덴식 지방분권형 모델을 적극 건의
 - 스웨덴은 지방세율(31%), 지자체 교부금 비중(광역-22%, 기초18%) 모두 높은 수준이며, 정부간 역할을 구분하면서 '지자체 재정균등화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통제
 - 중앙정부는 사회보험 등 전국적 기준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관장하며,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복지재정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복지분야 업무배분체계: 중앙정부-사회보험급여관리, 정책수립, 재원확보 및 조정(세원: 사회보장세, 연금금, 부가세 등), 광역정부-전문의료·보건서비스, 기초정부-사회서비스, 사회부조, 초중등교육(세원: 지방세 및 교부금)
- 그러나 급진적·일시적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기도는 '지방대응비 자연감소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i) 한시적 기준보조율 조정, ii) 법률 개정 건의 건의 필요
 - (한시적 기준보조율 조정)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지방비 부담 규모가 증가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방정부는 지방비의 자연증가분만을 부담하고,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추가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 (법률개정) 개별법령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구

- 이를 통해 중앙-지방간, 광역-기초간 경직적 복지재정 분담체계를 유연화하고, 지방비 부담 규모의 자연 감소를 유도
- 자연감소 전략이 정착되면, 향후 복지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임의적인 지방매칭비 분담구조를 법률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정

〈참고 1〉 공동사무의 유형 구분

		공동사무			지방 자치 사무
		복지사업의 사회적 성격			
		기초생활보장 (중앙정부 책임)	사회기반 투자 (중앙-지방 공동)	일상생활 지원 (지방정부 책임)	
국가 직접 사무	미야	유형 I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특정장애인시설(꽃동네)			
	중간	유형 II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유형 III 긴급복지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미야		유형 IV 청소년 여가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유형 V 경로당 지원, 화장시설 지원	

〈참고 2〉 사회복지분야 한시적 기준보조율 개편안(예시)

구분	사업	현행 기준보조율		조정보조율
		지방(%)	서울(%)	공통
Type I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	60	90%
	의료급여사업	80	50	
	기초연금 지급	74.5	72	
	중증장애인연금	70	50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50	30	
Type II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70	50	7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0	50	
	가정양육수당 지원	65	35	
	영유아 보육료(보조)	65	35	
Type III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70	50	50%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70	50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50	50	
	긴급복지지원사업	80	50	
Type IV	장애인 일자리 지원	50	30	3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0	50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70	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0	50	
Type V	어르신 일자리사업	50	30	10%
	어린이집 지원(보조)	50	20	
	지역공동체 일자리	50	5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75	70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70	5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0	50		